사단법인 한국이스포츠협회 정관

20.06.12

제 1 장 총칙

제 1 조(근거 및 명칭) ① 이 정관은 민법 제 32 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4 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정관 제 7 조 및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한국 e 스포츠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협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이스포츠협회(이하 "협회")로 하며, 영문으로 Korea e-Sports Association(약칭 KeSPA)로 한다.

제 2 조(목적 및 지위) 협회는 이스포츠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이스포츠를 통한 공익실현과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소재지 등) ① 협회의 사무소는 국내에 둔다.

② 협회의 법적 성격은 사단법인으로 한다.

제 4 조(사업) ① 협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이스포츠(각종 프로·아마게임대회) 육성 지원 및 각종 세계대회에 국가대표단의 선발·파견
2. 이스포츠 경기장·게임박물관 등 e 스포츠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운영
3. 프로게이머 등록제도 운영
4. 공인게임대회 등 대회의 표준 및 심사기준 등의 제정
5. 청소년·가족참여프로그램·게임캐릭터축제 등 청소년게임문화진흥 사업

6. 전국 이스포츠 대전 개최
7. 게임관련 국제교류사업
8. 우수 게임개발지원을 위한 세미나, 심포지엄, 전시회 등의 개최
9. 게이머의 권익보호 및 교육훈련
10. 게임방송 콘텐츠에 관한 사업
11. 올바른 게임문화 창달 및 사회공헌사업을 위한 기부・봉사 사업
12. 이스포츠 발전을 위한 각종 수익사업
13. 각 호에 관련한 소매업
14. 각 호에 관련한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업)
15.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협회는 시도협회의 요청에 따라 소관범위 내 종목 보급 및 대회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전국규모의 사업은 협회가 주최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제 1 항 제 4 호의 공인과 관련하여 국제공인 규정을 벗어난 공인요건을 신설하거나 특정업체의 제품사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되며, 공인료도 필요 이상으로 부과할 수 없다.

④ 협회의 공인요건, 공인료, 공인기한 등 공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가 정한 규정을 참고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 2 장 조직

제 5 조(조직) ① 협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 4 조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국규모연맹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회에 대한 시도협회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권리와 의무는 체육회 정관 제 10 조를 준용한다.

③ 협회는 재외한인회원단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인정 및 운영,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5 조의 2(전국규모연맹체) ① 제 5 조 제 1 항에 따른 전국규모연맹체는 시·도

연맹체를 둘 수 없다.

② 협회는 전국규모연맹체의 조직 및 운영과 권리 및 의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해 이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정한 후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전국규모연맹체에 대해 제 2 항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규약의 승인, 임원의 인준, 임원의 임기 횟수제한의 예외 심사, 정기 감사의 실시 등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④ 협회는 전국규모연맹체에 소관 범위 내의 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

제 6 조(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협회는 체육회 정관 제 7 조 및 제 10 조에 따른 회원단체의 권리와 의무 중 체육회가 승인한 협회의 회원단체 등급에 상응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회원의 자격)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협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 또는 협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정회원: 사단법인 한국이스포츠협회 규약(이하 협회 규약)에 따라 협회에 가입된 회원 e스포츠팀,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인사, 기관 또는 단체

2. 준회원: 시도협회, 위 제1호에 포함되지 않으나 협회 규약에 따라 등록한 팀, 선수, 지도자, 심판

제 8 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의 행사
2. 협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의 제기
3. 협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대회와 사업에 참가
4. 협회가 인정하는 관련 업무 현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을 권리

5. 기타 협회 정관 및 규정에 따른 권리의 행사

②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협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의 제기
2. 협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대회와 사업에 참가

제 9 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다만, 명예직은 제외한다)
4. 협회 가입 시 본 정관 제 10 조 1 항 및 협회 규약 제 5 조 1 항에 따른 서류 제출

제 10 조(회원의 가입 및 탈퇴) ① 협회의 정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회 규약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제 2 항의 등록 절차를 따른다. 가입 후 가입신청서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협회에 즉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준회원의 가입절차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도협회는 협회 규약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등록 팀은 협회 규약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협회의 준회원 자격을 취득한다.
3. 선수, 지도자는 협회 등록 팀의 선수, 지도자로서 등록함으로써, 심판은 협회 등록을 함으로써 각 준회원 자격을 취득한다.

③ 회원이 협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서면으로 탈퇴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④ 회원인 법인, 단체, 기관 또는 협회 산하 시도협회가 해산, 청산, 폐업, 기타사유로 인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⑤ 회원이 탈퇴한 경우에는 탈퇴 후 1 년 이내에 재가입할 수 없으며, 이미 납부한 회비 등 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회원의 상벌) ① 협회의 회원으로서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협회의 회원이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된 경우 제명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는 재가입할 수 없다. 제명된 경우 회원으로서 이미 납부한 회비 등 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협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6 개월 이하의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징계의 세부기준은 협회 규약에 따른다.

1. 정관 및 제 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회비 또는 제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회계연도 시작일로부터 6 개월 이상 미납한 때
3.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협회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때

④ 회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는 해당 회원에게 이사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에 의하여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 4 장 총회

제 12 조(총회의 구성) ①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함)는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제 7 조 1 호에 따른 정회원(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으로 구성된다.

② 제 1 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제 2 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 일 전까지 협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13 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협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전국규모연맹체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협회 임원의 선출 및 이사의 증원,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 14 조(총회의 소집) ① 협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정기총회 개최일 7 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 일 이내에 협회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협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 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 29 조 제 4 항 제 4 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총회 소집권자의 궐위 또는 제 2 항 제 2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 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회장 직무대행 포함) 및 감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시총회의 소집은 개최 7 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협회의 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총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총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15조(의장) ① 협회의 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

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② 제14조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제 1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정관 개정안은 총회에서 재적대의원이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7 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협회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 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해임 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해임 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 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협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 18 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19 조(총회의 운영) 이 정관 외 협회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정관을 준용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 20 조(이사회의 구성) 협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 21 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 회원 가입 및 상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각종 수익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사항

② 위 제 1 항 1 호의 사항 중 종목별 프로 관련 사업의 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은 협회 규약에 따라 해당 종목 연합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 22 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 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 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29 조 제 4 항 제 4 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 23 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회원의 강등 및 제명안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회원을 강등 또는 제명하거나 준회원을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회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강등 및 제명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제 24 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 전략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협회의 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6장 임원

제 25 조(임원) ①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협회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 명

2. 부회장 7 명 이하 (지역, 여성 등 직능별 대표 포함 권장)
3. 이사 29 명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 명

② 협회의 임원은 협회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으나 협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제 26 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혹은 회장의 궐위 시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본문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부회장 또한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혹은 그 부회장의 궐위 시에는 제 50 조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 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 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 제 1 항에 따른 사람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 년 이상인 경우에는 60 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 27 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총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협회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 2 항 단서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로 **한정한다.**

④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제 12 조의 대의원 중에서 행정감사 1 명, 회계감사

1 명(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⑥ 협회의 임원이 취임 후에 제 31 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드러나는 경우에는 취임 취소 또는 면직, 해임된다.

제 28 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협회의 대의원 및 임원은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② 협회의 임원이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회장선출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전일까지 협회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 29 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회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협회의 보조금 등 예산의 투명한 진행을 위한 회계를 감사하는 일
3.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4.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는 일
5. 제 4 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협회의 임원이 협회 등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⑥ 협회의 임원이 협회 등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⑦ 협회의 임원이 협회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시도협회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협회의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협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 29 조의 2(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 30 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 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1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의 기간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30 조의 2(연임 횟수의 산정)

①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1. 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부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사 및 감사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②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연임 여부는 전임 임기의 만료일과 후임 임원으로서의 취임일의 연속여부와 관계없이 전후 임기 내 임원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1 회 연임으로 산정한다.(임기 내 사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③ 제 30 조제 3 항의 보선된 임원과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은 재임기간과 관계없이

1 회 재임한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임한 임원이 동일 임기 내에 임원으로 보선 및 증원된 경우는 재임 횟수로 추가 산정하지 않는다.

제 31 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2. 「국가공무원법」제 33 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 2 조제 9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 355 조 및 제 356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 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 2 조제 9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 314 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 47 조 및 제 48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제 2 조제 9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 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6. 국회의원
7.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8. 체육회 이사회가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 협회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4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 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 777 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협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협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자로부터 협회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협회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그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은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제 32 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협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 31 조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해당 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2. 시도협회, 전국규모연맹체의 임원 또는 회원 e 스포츠팀이나 e 스포츠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3. 제 26 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사람

제 32 조의 2(명예직의 위촉)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 명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② 제 31 조 제 1 항 각 호(제 6 호 제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 1 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③ 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 7장 시도협회(지회)

제 33 조(지위 및 명칭) ① 시도협회는 협회의 회원으로 각 시·도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② 시도협회는 시·도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를 시·도체육회 소재지에 둔다.

③ 시도협회는 시도협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각 시·군·구 회원단체를 회원으로 둘 수 있다.

제 34 조(시도협회의 규정 등) 시도협회의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본 정관 및 시도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시도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 35 조(임원인준 등) ① 시도협회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협회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시도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협회는 제 1 항에 따른 인준동의 여부를 30 일 이내에 해당 시도체육회에 회신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제 36 조(규정 승인) ① 시도협회는 제 34 조에 따라 시·도체육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시도협회의 정관(규약)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회와 협의를 거쳐

시·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② 시도협회는 해당 종목의 대회운영 규정 등 해당 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장 각종 위원회

제 37 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협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 1 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7 명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협회의 등록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 38 조(e 스포츠공정위원회) ① 협회는 e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 조정요청 및 상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e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e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e 스포츠 관계자의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2. 협회와 그 관계단체(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경기, 제도, 계약, 단체운영 등)의 조정
3. e 스포츠 선수 및 지도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③ 이 규정 외에 e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적용대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을 참고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 39 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 31 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에 설치하는 제 37 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각종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 39 조의 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제 37 조 및 제 38 조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제 777 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 1 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 9장 재산 및 회계

제 40 조(재산의 구분)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 1 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은 연 1 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1 조(재원) ① 협회가 제 4 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협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금
2.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3. 회비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대회 참가비
7. 각종 공인수수료
8. 사업수익금
9.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10. 기부금 및 찬조금

② 제 1 항에 따라 충당된 경비 중 기부금에 관하여는 이 법인의 홈페이지(www.e-sports.or.kr)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 개월 내 공개한다.

제 42 조(잉여금의 처리) 협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 43 조(재산의 관리) ①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협회가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② 협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협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정관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국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 44 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협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체육회, 협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시도협회의 임·직원
2. 협회의 임·직원과「민법」제 777 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체육회, 협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시도협회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 45 조(수익사업) 협회는 제 4 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고 이스포츠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이사회 승인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46 조(기금의 운용) 각종 기금별로 계정을 따로 정하고 회계연도결산서에 기금 적립 실적을 명기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의결로써 기금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47 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48 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협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9 조(회계감사 등) ① 협회는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연 1 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 10장 사무국

제 50 조(사무국) ① 협회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과 직원을 둔다.

② 총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협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④ 총장 및 직원은 형의선고·징계처분 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및 취업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51조(사무국의 운영 등) 협회는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가. 직원의 신분보장 및 근로조건(보수 및 복무 등)
   나. 채용 시 공개채용 원칙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 또는 정직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2.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 11장 보칙

제 52 조(해산) ① 협회는 재적대의원 4 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인가 취소(법인에 한한다)로 해산한다.

② 협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 53 조(정관변경) 협회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54 조(규정 제·개정 등)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제55조(경영공시) ① 협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결과,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협회의 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제 56 조(업무보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 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 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 부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 부

부칙

제 1 조(시행일) ①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정관 제 4 조 제 3 호와 관련된 사업은 2000 년 7 월 1 일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정관변경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01. 6. 8>

제 3 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정관변경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3. 12. 17>

제 4 조(경과규정) 이전 정관에 의한 이사회 구성원은 변경된 정관에 의해 선임된 것으로 하며, 임기는 변경정관에 의한다. 단 2 기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008 년 4 월 6 일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6. 8. 9>

제 5 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정관변경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6. 8. 9>

제 6 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정관변경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4. 2. 18>

제 7 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정관변경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4. 12. 09>

제 8 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정관변경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6. 05. 04>

제 9 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정관변경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7. 05. 23>

제 10 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0. 06. 12>

제 11 조(경과조치) 제 30 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선임된 임원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0. 06. 12>